

서울특별시종로구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06. 12. 13.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
시 민 행 정 위 원 회

1. 審査經過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6년 11월 20일 · 종로구청장 원안 제출
- 나. 회부일자 : 2006년 11월 21일 원안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170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정례회
제1차 시민행정위원회(2006. 12. 13) 상정 · 의결

2. 提案說明의 要旨 (제안설명자 : 주민생활지원국장 조 성 린)

가. 제안이유

○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준수하고,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위원회에 기금운용 심의에 대한 세부사항을 신설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·보완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○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, 기금운용의 성과분석, 기타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여성위원회의 심의·의결 사항으로 명시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

(보고자 : 전문위원 박 성 열) — 별첨 검토보고서 참조

4. 質疑 및 答辯 要旨 (생 략)

5. 討 論 要 旨 (없 음)

6. 修 正 案 의 要 旨 (없 음)

7. 審 査 結 果 : 원안가결

(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함)